

# 시립청소년성문화센터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

## 심사보고서

의안 번호	3711
----------	------

2026년 6월 24일  
행정자치위원회

### 1. 심사경과

- 가. 제출자 : 서울특별시장
- 나. 제출일 : 2026년 5월 26일
- 다. 회부일 : 2026년 5월 27일
- 라. 상정일 : 제336회 서울특별시의회 정례회 제1차 행정자치위원회  
2026년 6월 16일 상정·의결(원안 가결)

### 2. 제안설명의 요지

(제안설명자 : 평생교육국장 정진우)

#### 가. 제안이유

-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 제1항 및 제6조 제1호에 의하여 시립청소년성문화센터를 설치·운영하고자,
- 청소년 성교육 및 상담 관련 전문성과 노하우를 활용하여 안정적인 사업운동을 도모하기 위하여 민간기관(단체)에 민간위탁을 추진함에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의3에 의거 서울특별시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함.

## 나. 주요내용

○ 위탁사무명 : 시립청소년성문화센터 관리·운영

○ 민간위탁 추진근거 및 추진 필요성

- 민간위탁 추진근거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7조(아동·청소년 대상 성교육 전문기관의 설치·운영)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아동·청소년 대상 성교육 전문기관의 설치·운영의 위탁 등)
- 「서울특별시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0조(권한의 위임 또는 위탁)
-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 제1항 및 제6조 제1호

- 민간위탁 추진 필요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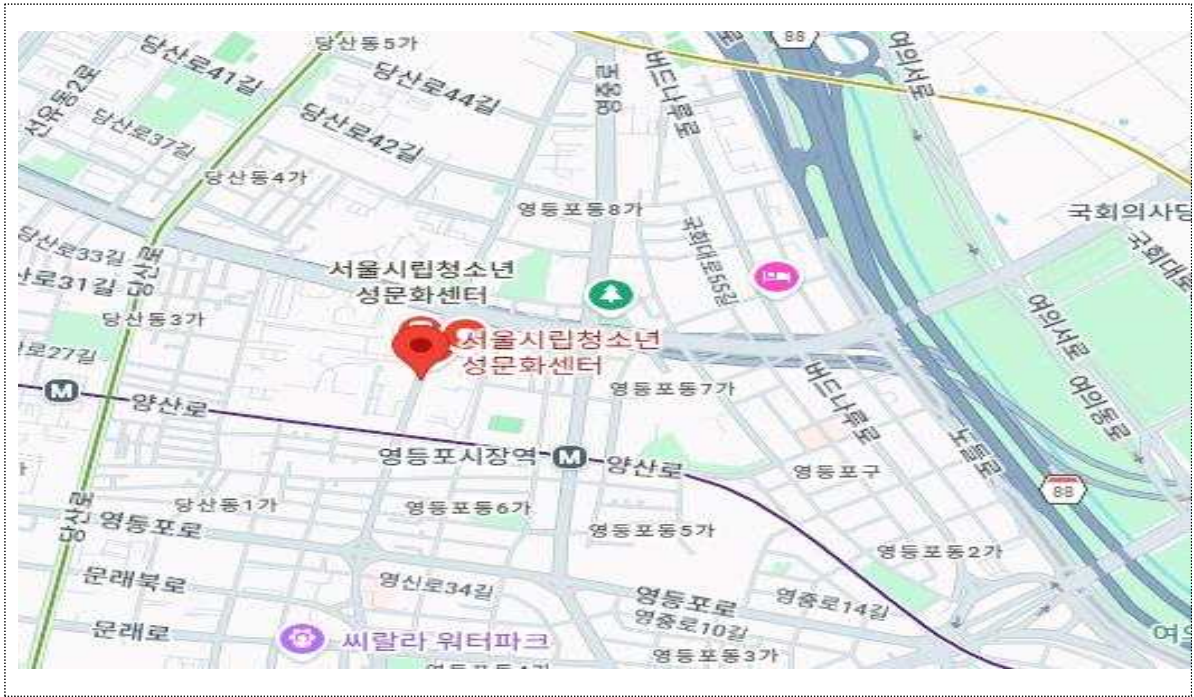
- 청소년성문화센터는 청소년의 발달단계에 맞는 전문화된 성교육을 통해 성에 대한 올바른 가치관을 형성하고, 성관련 유해매체로부터의 노출을 예방하여 청소년이 안전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교육, 상담을 지원하는 전문기관으로,
- 민간위탁을 통해 청소년 성교육 전문가 인력 및 운영 노하우를 확보할 수 있으며, 이미 구축되어있는 민간조직망을 활용하여 체계적이고 효과적인 공공 서비스 전달과 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함.

○ 위탁 사무 내용

- 아동·청소년 성교육 및 상담
- 찾아가는 성교육, 거리상담활동, 학부모 성교육
- 기타 청소년 성교육 관련 자료 연구 등

○ 위탁시설 개요

- 소재지 : 서울시 영등포구 영신로 200 (대표센터)
- 시설규모 : 749.83 $m^2$
- 주요시설 : 교육강의실, 면접상담실, 연구실, 사무실 등
- 위치도



※ 5개 사무소(분소), 1개 사무소 예정

- 광진사무소 : 광진구 구천면로 2 (262.94 $m^2$ )
- 동작사무소 : 동작구 여의대방로 20길 23-1 (302.3 $m^2$ )
- 드림사무소 : 양천구 남부순환로 54길 37 (416.51 $m^2$ )
- 은평사무소 : 은평구 통일로 62길 7, 지상 1층 일부 (143.53 $m^2$ )
- 창동사무소('26.7.1. 사무소화 예정) : 도봉구 노해로 69길 132 (183.49 $m^2$ )
- 성북사무소('27.7.1. 사무소화 예정) : 성북구 길음로 7길20 지하 1층, 지상 2층 일부 (1,510.75 $m^2$ )

- 민간위탁 기간 : 3년(2027.1.1. ~ 2029.12.31.)
- 수탁자 선정방식 : 공개모집
- 소요예산 및 산출근거
  - 소요예산 : 2,717백만원('26년, 국비 626백만원, 시비 2,091백만원)
  - 산출근거
    - 인건비 2,434백만원, 운영비 100백만원, 사업비 183백만원,
- 민간위탁운영평가위원회 심의결과 : 적정

### **3. 참고사항**

- 가. 관계법령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서울특별시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 다. 합 의 : 해당 없음.

## 4.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수석전문위원 김태한)

- 본 동의안은 ‘(재)한국기독교청년회전국연맹유지재단’에 위탁하여 운영 중인 시립청소년성문화센터(이하 ‘청소년성문화센터’)를 2027년 1월부터 3년간(2027.1.1.~2029.12.31.) 새로운 단체에 위탁·운영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의회(이하 ‘시의회’)의 동의를 얻으려는 것임.

### 〈 ‘청소년성문화센터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의 개요 〉

- **위탁사무명** : 시립청소년성문화센터 관리·운영
- **위탁사무**
  - 아동·청소년 성교육 및 상담
  - 찾아가는 성교육, 거리상담활동, 학부모 성교육
  - 기타 청소년 성교육 관련 자료 연구 등
- **소재지** : 서울시 영등포구 영신로 200 (대표센터)
- **시설규모** : 면적 749.83㎡
- **주요시설** : 교육강의실, 면접상담실, 연구실, 사무실 등

※ 4개 사무소(분소), 2개 사무소 전환 예정

- 광진사무소 : 광진구 구천면로 2 (262.94㎡)
- 동작사무소 : 동작구 여의대방로 20길 23-1 (302.3㎡)
- 드림사무소 : 양천구 남부순환로 54길 37 (416.51㎡)
- 은평사무소 : 은평구 통일로 62길 7, 지상1층 일부(143.53㎡)
- 창동사무소(26.7.1. 사무소화 예정) : 도봉구 노해로69길 132 (183.49㎡)
- 성북사무소(27.7.1. 사무소화 예정) : 성북구 길음로 7길20 지하1, 지상2층 일부 (1,510.75㎡)

- **위탁기간** : 3년(2027.1.1. ~ 2029.12.31.)
- **수탁자 선정방식** : 공개모집
- **소요예산** : 2,717백만원(2026년, 국비 626백만원, 시비 2,091백만원)
  - 산출근거 : 인건비 2,434백만원, 운영비 100백만원, 사업비 183백만원
- **민간위탁운영평가위원회 심의결과** : 적정

## 〈現 시립청소년성문화센터 민간위탁 현황〉

- 수탁법인 : (재)한국기독교청년회전국연맹유지재단(센터장 이명화)
  - 수탁기간 : '25.9.29. ~ '26.9.30.(1년) ('26년 운영예산 2,378백만원)
  - 수탁내용 : 대표센터 1개(영등포) 및 분소 4개(은평·동작·드림·광진) 관리 운영
- ※ (창동센터) '26.7월 위탁종료 후 분소 전환 예정, (성북센터) '27.7월 위탁종료 후 분소 전환 예정

※ 평생교육국은 청소년성문화센터의 민간위탁(재위탁) 추진을 위해 現수탁기관과의 협약 기간('25.9.29.~'26.9.30.) 종료 후 現수탁기관과 위탁기간 일시연장(90일 연장, '26.10.1.~'26.12.31.)을 체결할 예정임.

- 평생교육국은 2024년 10월 기존 청소년성문화센터(7개소)의 업무 체계화 및 전문성 확보를 위해 재구조화(1개 대표센터-6개 사무소) 방침(「시립청소년시설 재구조화 및 운영 개선방안」, '24.10.23.)을 마련하여, 시의회의 민간위탁 동의('25.4.25.)를 받았으며,
  - 이 과정에서 시의회 및 언론 등의 지적사항(수탁법인의 편향성 우려, 공공성·표준화된 서비스 확보 등)을 반영한 개선 방안으로 청소년성문화센터의 공공위탁 추진(「서울시여성가족재단」 위탁 협의) 방침(「시립청소년시설 민간위탁 개선계획」, '25.5.28.)을 마련하였고, 공공위탁 사전 준비기간 확보를 위해 2025년 9월 청소년성문화센터의 단기위탁 협약(1년 단기)을 체결((재)한국기독교청년회전국연맹유지재단, '25.9.29.~'26.9.30.) 하였으나,
    - 2026년 1월 공공위탁 협의가 무산됨에 따라 청소년성문화센터를 다시 민간위탁(재위탁)으로 운영하는 방침(「시립청소년시설 운영 개선계획」, '26.3.16.)을 수립하여, 금번 민간위탁 동의안을 제출하였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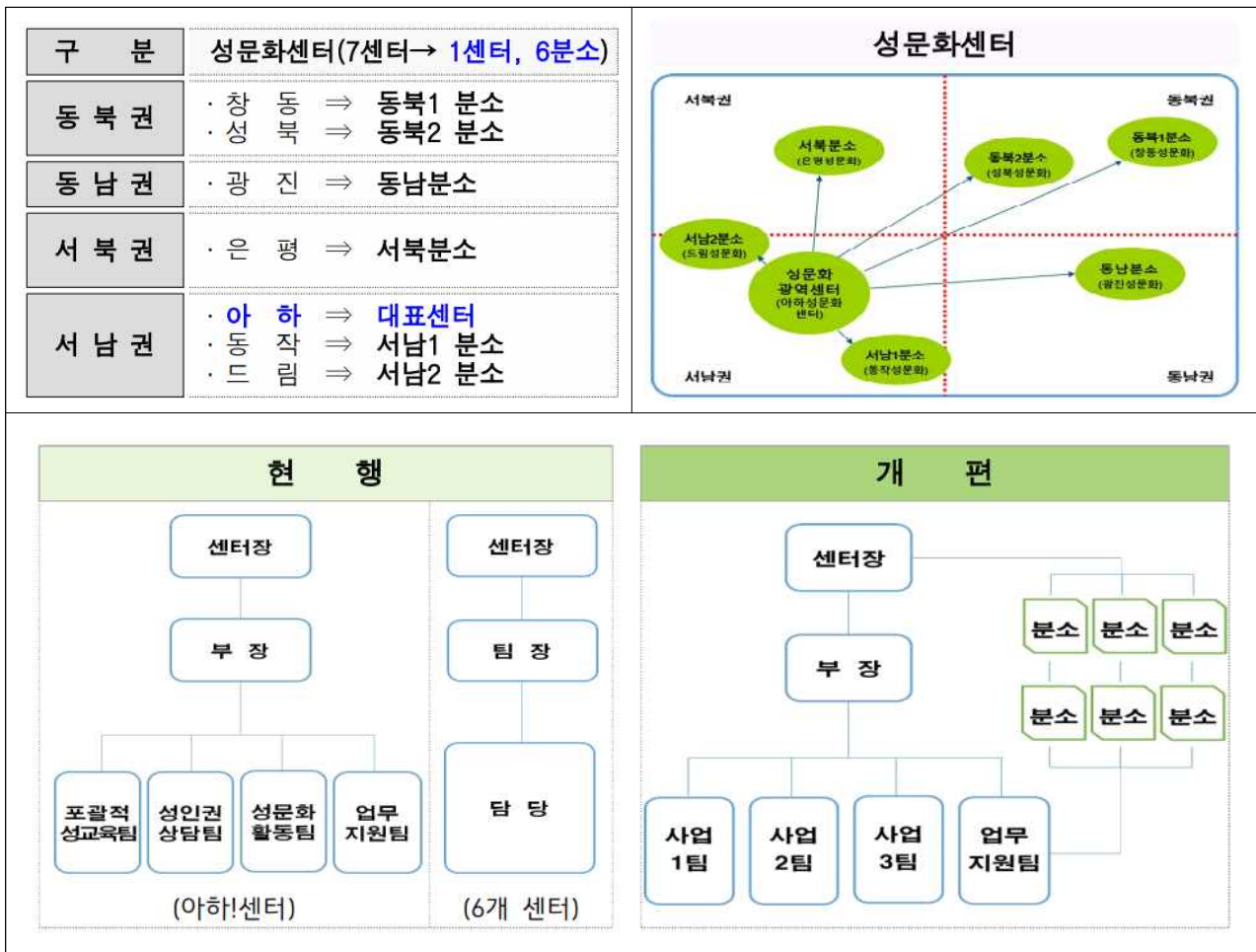
### ※ 청소년성문화센터 관련 운영 방침 변경

- 「시립청소년시설 재구조화 및 운영 개선방안」(행정1부시장방침 제214호, '24.10.23.)
  - 업무 체계화 및 전문성 확보를 위한 재구조화(7개 센터 → 1개 대표센터, 6개 사무소 개편)

- 「시립청소년시설 민간위탁 개선방안」(행정1부시장방침 제86호, '25.5.28.)
  - '청소년성문화센터' 공공성 확보 및 편향성 우려 불식을 위한 공공위탁(서울시여성가족재단) 추진
  - 공공위탁 사전 준비기간 확보를 위해 단기위탁(1년, '25.9.29.~'26.9.30.) 추진
- 「시립청소년시설 운영 개선계획」(청소년정책과-6070호, '26.3.16.)
  - 청소년성문화센터 민간위탁(재위탁) 및 대표센터 중심의 재구조화 실효성 강화 추진
- 「2026년 하반기 시립청소년시설 민간위탁 추진계획(재위탁)」(청소년정책과-9494호, '26.5.6.)
  - 공공위탁 방식을 변경하여 민간위탁(재위탁, 3년) 추진
- 「시립청소년성문화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제출('26.5.26.)
  - 청소년성문화센터 재위탁 추진 : 3년(2027.1.1. ~ 2029.12.31.)

※ **청소년성문화센터 재구조화** (「시립청소년시설 재구조화 및 운영 개선방안」, '24.10.23.)

- 연차별 통합 및 재구조화 추진('25년 1센터 4분소 → '26년 1센터 5분소 → '27년 1센터 6분소)
- 대표센터 중심 업무체계화(인력·예산·조직 일원화 등) 및 전문성(상담·교육기능) 강화



- 청소년성문화센터는 청소년의 발달단계에 맞는 전문화된 성교육을 통해 성에 대한 올바른 가치관을 형성하고, 성관련 유해매체로부터의 노출을 예방하여 청소년이 안전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교육, 상담을 지원하는 전문 기관으로, 평생교육국은 청소년 성교육 전문 인력 및 운영 노하우 확보, 민간 조직망을 활용한 체계적이고 효과적인 공공서비스 전달 등을 위해 민간 위탁의 필요성을 제출하고 있으나,
  - 민간위탁 동의안 제출 이전 청소년성문화센터 운영 관련 내부 방침(공공 위탁 추진) 등을 통해 2026년 9월 이후 '서울시여성가족재단' 등으로의 공공위탁을 여러 차례 언급했던 상황을 고려할 때, 현 수탁기관과의 민간위탁 일시연장('26.10.1.~'26.12.31., 90일 연장) 추진을 비롯해 센터의 공공위탁이 아닌 민간위탁을 재추진하는 배경 및 당위성을 제대로 적시하지 않고 있는바, 평생교육국의 운영 방침 변경(공공위탁 추진 → 민간위탁 재추진)에 대한 책임 있는 설명 없이 본 동의안을 처리하는 것이 적정한지 종합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하겠음.
  
- 또한, 본 민간위탁에 대해 서울시 민간위탁 운영평가위원회(2026년 제3차, '26.5.7. 개최) 회의록에서 '운영주체에 따른 종교기관의 특성 발생 문제'를 지적하며, 공공성 및 표준성 확보 방안에 관한 언급이 있었던바,
  - 청소년성문화센터 민간위탁 재추진에 따른 공공성 및 표준성 확보 방안을 평생교육국이 구체적으로 마련하고 있는지, 특정 수탁기관(종교단체 등)으로 인한 편향성 발생에 대한 해결책이 있는지 확인이 필요하다고 하겠음.

**< 2026년 민간위탁운영평가위원회 심의결과 >**

- 심의일자 : 2026년 제3차 위원회 (2026년 5월 7일)
- 심의결과 : 적정

〈 2026년 제3차 민간위탁 운영평가위원회 회의록('26.5.7.) 〉

< 000 위원장 >

- 이 종교 기관의 특성 드러나는 부분들은 어떻게 컨트롤하고 있으세요? 운영 주체가 이제 종교 기관이 특성을 보일 수 있는 곳들이잖아요.

<소관부서[청소년정책과]>

- 지난해 이런 성문화에 대해서 급진적이라는 내용과 더불어서 또 지나치게 보수적이라는 내용으로 양측에서 비판이 있었습니다. 저희가 그래서 작년에 표준 매뉴얼을 제작을 해서 그거에 따라서 운영을 하고 있고요. 종교적이나 이런 색채가 드러나지 않도록 교육 내용에 대한 지도 점검이나 현장 점검 등을 통해서 그런 공공성 표준성을 강화하고 있고요. 저희가 앞으로 운영 협의체 같은 거를 구성해서 편향되지 않는 교육이 되도록 모니터링해 나갈 예정입니다.

- 마지막으로, 평생교육국은 현 수탁기관과의 민간위탁 일시연장('26.10.1.~'26.12.31., 90일 연장) 이후 본 동의안을 통해 새로운 재위탁(3년, '27.1.1.~2029.12.31.)을 추진하겠다는 입장이나, 현 수탁기관과의 민간위탁 일시연장 협약을 체결하지 않은 상태로 동의안을 제출한바,
  - 현 수탁기관과 협의가 완료되지 않은 동의안을 시의회에 제출하여 동의를 구하는 것이 적정한지, 일시연장 협약이 무산되는 경우 민간위탁(재위탁) 추진 및 청소년성문화센터 운영에 심각한 문제가 발생하는 것은 아닌지 신중한 검토가 필요해 보이며, 평생교육국의 불성실한 민간위탁 동의안 제출에 엄중한 경고가 필요할 것으로 보임.

5.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6. 토론요지 : 없음.

7. 심사결과 : 원안 가결(재석위원 5명, 전원찬성).

8. 소수의견의 요지 : 없음.

9.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

# 시립청소년성문화센터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

의안 번호	3711
----------	------

제출년월일 : 2026년 5월 26일  
제출자 : 서울특별시

## 1. 제안이유

- 가.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 제1항 및 제6조 제1호에 의하여 시립청소년성문화센터를 설치·운영하고자,
- 나. 청소년 성교육 및 상담 관련 전문성과 노하우를 활용하여 안정적인 사업운동을 도모하기 위하여 민간기관(단체)에 민간위탁을 추진함에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의3에 의거 서울특별시의회에 위탁 동의를 받고자 함

## 2. 주요내용

가. 위탁사무명 : 시립청소년성문화센터 관리·운영

나. 민간위탁 추진근거 및 추진 필요성

○ 민간위탁 추진근거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7조(아동·청소년 대상 성교육 전문기관의 설치·운영)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아동·청소년 대상 성교육 전문기관의 설치·운영의 위탁 등)
- 「서울특별시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0조(권한의 위임 또는 위탁)
-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 제1항 및 제6조 제1호

○ 민간위탁 추진 필요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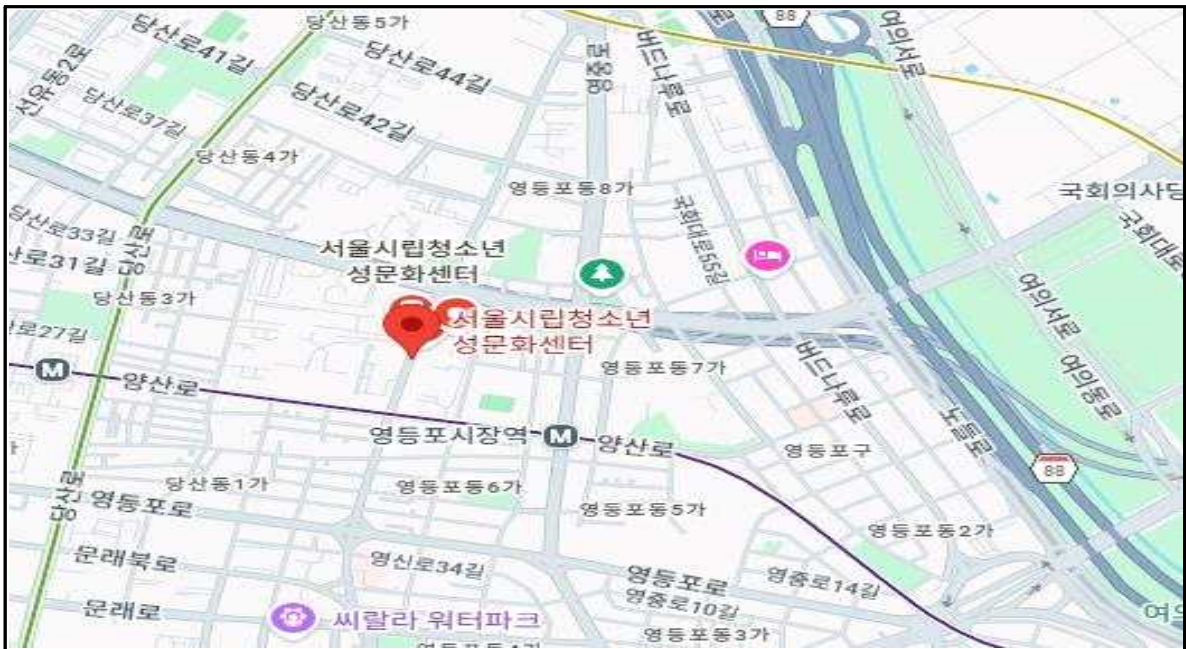
- 청소년성문화센터는 청소년의 발달단계에 맞는 전문화된 성교육을 통해 성에 대한 올바른 가치관을 형성하고, 성관련 유해매체로부터의 노출을 예방하여 청소년이 안전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교육, 상담을 지원하는 전문기관으로,
- 민간위탁을 통해 청소년 성교육 전문가 인력 및 운영 노하우를 확보할 수 있으며, 이미 구축되어있는 민간조직망을 활용하여 체계적이고 효과적인 공공서비스 전달과 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함

다. 위탁 사무 내용

- 아동·청소년 성교육 및 상담
- 찾아가는 성교육, 거리상담활동, 학부모 성교육
- 기타 청소년 성교육 관련 자료 연구 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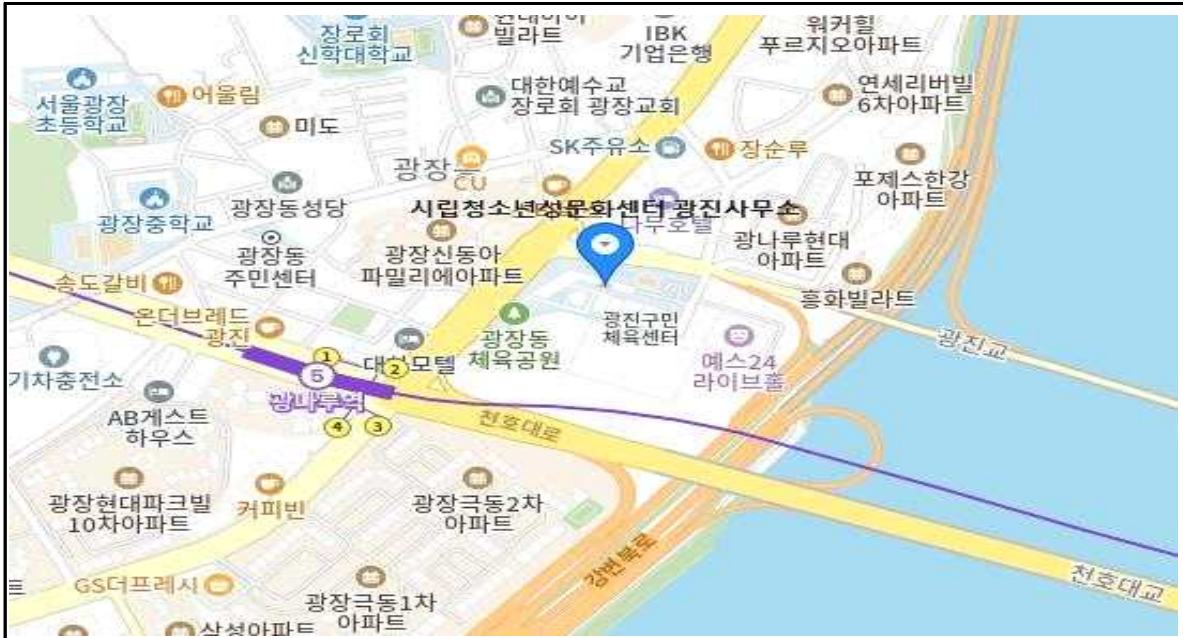
라. 위탁시설 개요(위치도, 소재지, 규모, 주요시설)

○ 대표센터



소재지(면적)	서울시 영등포구 영신로 200(749.83㎡)
시설소유	시유재산
주요시설	교육강의실, 면접상담실, 연구실, 사무실 등

○ 광진사무소



소재지(면적)	서울시 광진구 구천면로 2(262.94㎡)
시설소유	시유재산
주요시설	교육강의실, 면접상담실, 사무실 등

○ 동작사무소



소재지(면적)	서울시 동작구 여의대방로 20길 23-1(302.3㎡)
시설소유	시유재산
주요시설	교육강의실, 면접상담실, 사무실 등

○ 드림사무소



소재지(면적)	서울시 양천구 남부순환로 54길 37(416.51㎡)
시설소유	(재)한국천주교살레시오회
주요시설	교육강의실, 면접상담실, 사무실 등

○ 은평사무소



소재지(면적)	서울시 은평구 통일로 62길 7, 지상1층 일부(143.53㎡)
시설소유	시유재산
주요시설	교육강의실, 면접상담실, 사무실 등

○ 창동사무소('26. 7. 1. 사무소화 예정)



소재지(면적)	서울시 도봉구 노해로 69길 132(183.49㎡)
시설소유	시유재산
주요시설	교육강의실, 면접상담실, 사무실 등

○ 성북사무소('27. 7. 1. 사무소화 예정)



소재지(면적)	서울시 성북동 길음로 7길20 지하1, 지상2층 일부(1,510.75㎡)
시설소유	시유재산
주요시설	교육강의실, 면접상담실, 사무실 등

마. 민간위탁기간 : 3년(2027. 1. 1.~2029.12.31.)

바. 수탁자 선정방식

○ 적격자심의위원회를 통한 수탁기관 공모·선정(재위탁)

- 재위탁 사유: 관련 분야의 전문성 및 교육 경험을 갖춘 전문기관 선정을 통해 청소년 성교육의 효과성 제고

사. 소요예산 및 산출근거

○ 소요예산 : 2,717백만원('26년, 국비 626백만원, 시비 2,091백만원)

- 2026.5. 현재, 3센터(대표·창동·성북), 4사무소(광진·드림·동작·은평) 운영 중

- 2026.7.1.부터 2센터(대표·성북), 5사무소(광진·드림·동작·은평·창동) 운영

- 2027.7.1.부터 1센터(대표), 6사무소(광진·드림·동작·은평·창동·성북) 운영

○ 산출근거 : 인건비 2,434백만원, 운영비 100백만원, 사업비 183백만원

아. 민간위탁운영평가위원회 심의결과 : 적정

###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7조(아동·청소년 대상 성교육 전문기관의 설치·운영)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아동·청소년의 건전한 성가치관 조성 및 성범죄 예방을 위하여 아동·청소년대상 성교육 전문기관(이하 "성교육 전문기관"이라 한다)을 설치하거나 해당 업무를 전문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아동·청소년 대상 성교육 전문기관의 설치·운영의 위탁 등)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법 제47조제1항에 따른 아동·청소년대상 성교육 전문기관(이하 "성교육 전문기관"이라 한다)의 설치·운영에 관한 업무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전문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1.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른 성폭력피해상담소를 설치·운영하는 단체
2. 「청소년활동 진흥법」 제10조제1호가목부터 다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청소년수련관, 청소년수련원 또는 청소년문화의집을 설치·운영하는 단체
3. 「청소년 기본법」 제3조제8호에 따른 청소년단체
4. 성교육을 주된 업무로 하는 단체

○ 「서울특별시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0조(권한의 위임 또는 위탁)

① 시장은 별표 1의 청소년시설에 대한 운영을 자치구청장에게 위임하거나 청소년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청소년시설의 운영 및 재정여건을 고려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운영비 등을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위탁기간은 3년 이내로 하되, 한 번만 갱신할 수 있다. 이 경우 갱신 기간은 2년 이내로 한다.

○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민간위탁 사무의 기준)

① 시장은 법령이나 조례에 정한 시장의 소관사무 중 조사·검사·검정·관리업무 등 시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계되지 아니하는 다음의 사무를 민간위탁 할 수 있다.

○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6조(민간위탁 사무내용) 제4조에 따라 민간에 위탁할 수 있는 사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노인·장애인·여성·청소년·노숙인 등 복지시설의 운영에 관한 사무

※ 작성자 : 평생교육국 청소년정책과 서정민 (☎ 2133-4130)